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1986.6.19>

| | | | | | | | |
|---|------------|--------|---|---------------------|--|---------------|---------------------------|
| 접수관청 | | | | | | 수험원서 | 반명함판 사진 4.5cm×3.5cm |
| 응시번호 | | | | | | 교통부장관귀하 | |
| 나는 제 회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
| ※ 하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으며 만일 시험 합격후에 허위 또는 불실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함. | | | | | | | |
| 197 년 월 일 응시자 (인) | | | | | | | |
| ① 본 적 | | | | | | | |
| ② 주 소 | | | | | | | |
| ③성 명 | (한 글) | ④ 성별 | 남 | ⑤ 생 년 월 일 | | ⑥ 주 민 등 록 번 호 | |
| | (한 자) | | 여 | 19 년 월 일생세 (만 세) | | | |
| ⑦ 최종학력 | 19 년 월 일 | 학교 | | 과 졸업·수료·재학 | | | |
| ⑧ 자 격 | 19 년 월 일 | 자격증 종류 | | No. | | | |
| ⑧ 자 격 | 19 년 월 일 | 자격증 종류 | | No. | | | |
| ⑨ 경 력 | 19 년 월 일부터 | | | | | | 종 사 |
| | 19 년 월 일까지 | | | | | | |
| ⑨ 경 력 | 19 년 월 일부터 | | | | | | 종 사 |
| | 19 년 월 일까지 | | | | | | |
| ⑨ 경 력 | 19 년 월 일부터 | | | | | | 종 사 |
| | 19 년 월 일까지 | | | | | | |
| ⑨ 경 력 | 19 년 월 일부터 | | | | | | 종 사 |
| | 19 년 월 일까지 | | | | | | |
| ⑦선택과목 | 비 고 | | | | | | |

※ 상기 각 항의 기재는 이면 응시자 참고사항을 참조하여 기입할 것.

⑧

| | | | | | | |
|------|-------|-----------------|---|-----------|-------|------------------------------------|
| 접수관청 | | <u>응 시 표(부)</u> | | | | 반명함판 사 진 4.5cm×3.5cm |
| 응시번호 | | | | | | |
| ※제 회 | | 자격시험 | | | | |
| 성 명 | (한 글) | 성 별 | | 남·여 | | |
| | | (한 문) | | | | |
| 생년월일 | 19 | 년 | 월 | 일 | (만 세) | |
| | | 197 | | 년 | 월 | 일 |
| | | | | 교 통 부 장 관 | | |

3006-3-3A

190mm×335mm

1976.6.23승인

(신문용지 54g/m²)

응 시 자 참 고 사 항

1. 응시원서 제출기간·응시자격·시험시행일시·장소·시험방법등은 당해시험시행공고에 의합니다
2. 응시원서 기재요령(기재사항은 자필로 기입합니다)
 - 가. ※란은 회수와 응시구분을 기입할 것.
 - 나. ①②항은 한글로 번지, 통, 반까지 기입할 것.
 - 다. ③항은 한글 및 한자로 기입할 것.
 - 라. ④항은 해당되지 않은 것을 지울 것.
 - 마. ⑤항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할 것.
 - 바. ⑥항은 주민등록증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할 것.
 - 사. ⑦항은 최종학교명과 졸업수료 또는 재학구분(해당되지 않는 것을 지울 것)을 기입할 것.
 - 아. ⑧항은 획득한 자격의 연월일과 자격명칭 및 발행번호를 기입할 것.
 - 자. ⑨항은 경력이 동시자격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명시하되 경력증명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 차. ⑩항은 응시과목중 선택과목이 있을 때에만 기입할 것.
 - 카. ⑪항은 회수, 응시구분, 성명(한자) 생년월일 및 연령을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하고 성별은 해당되지 않는 것을 지울 것.
3. 각종 구비서류(수험공고 참조)
4. 사진...6개월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4.5cm×3.5cm) 탈모상반신(특히 얼굴부분을 크게 찍어야 한다)사진으로서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사진란에 첨부할 것.
5. 수수료, 응시시행공고에 의한 소정액의 정부 수입인지 소인되지 아니한 것을 첨부할 것.
6.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7. 일단 제출된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수 입 인 지 침 부 난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교부받은 후 소정기입란에 누락된 사항이 없는가 확인한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사진 1매 제출)
3. 시험장에는 답안지 작성에 소요되는 펜(흑색 및 청감색 잉크 또는 볼펜) 이외는 휴대할 수 없다.
4.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응시표를 책상 바른편 위에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답안지에는 흑색 또는 청감색 볼펜 또는 펜중 한가지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난외에 기입하거나 방선기타 여하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된다.
6. 응시도중에 퇴장하거나 이석한 자는 다시 입장할 수 없으며 시험실내에서는 흡연담화, 물품의 대여등은 일체 금한다.
7.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시관의 지시에 순응치 않는 자는 즉석 퇴장을 명하며,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2년간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처분한다.
8. 기타 자세한 것은 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